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설치) ① 의소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역별로 설치한다.

1. 군지역 : 읍·면별로 군수가 설치

2. 시지역 :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소방서장이 설치

② 소방서와 읍에는 부녀의용소방대(이하 "부녀대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단, 면지역에는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.

③ 의소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 용소방대(이하 "지역대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명칭) ① 의소대의 명칭은 소방서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○○소방서의 용소방대라 하며, 군지역에 있어서는 ○○군 ○○읍·면 의용소방대라 한다.

제9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대원은 관할행정구역(동·리·통)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.

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대원의 임용) ① 대장, 부대장 및 부녀대장과 지역대장은 시지역의 경우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하며, 군지역의 경우 읍·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용한다. 이 경우 부대장, 지대장은 대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한다.

제15조 제1항중 "도지사는 대장의,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대원의"를 "임용권자는 대장 또는 대원의"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"도지사 와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"을 "임용권자는"으로 하며,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임용권자는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7-1호 서식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7-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8조 제2항중 "도예산으로"를 "임용권자가"로 하며,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복제는 기존대원은 매 2년마다, 신규대원은 임용후 3개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제2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시상황을 년 2회이상, 소방서장·군수는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, 대원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제22조중 "도예산에"를 "임용권자 소속기관에"로 한다.

제23조 제2항중 "30으로 나눈 금액의 70%(단, 백원미만은 절사한다)로"를 "30으로 나눈 금액(단, 백원미만은 절사한다)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95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대원(대장, 부대장, 부녀대장, 지대장)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, 대장 및 부녀대장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)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.